

# 십대여성인권센터

우150-8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EDACTED]

전화 02)6348-1318

전송 02)2690-1255

이메일 [REDACTED]

문의 권주리 사무국장, [REDACTED] 상담원

##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발에 관한

### 공동고발기관 참여 제안서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2016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사건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입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상대로 어플리케이션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하여 우리 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이러한 현실을 전부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2인의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 고발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공동고발기관에 함께 참여해 주시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시정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있는지 수사기관 및 정부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실태와 기획의도

가.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고 있음.

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가입이 용이하고, 쪽지를 삭제할 경우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

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성매매 업소 홍보 쪽지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쪽지가 난무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오히려 성매매가 이루어지기에 용이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운영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아래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성매매 조장 실태를 파악함.

### 다-1. 익명성/본인(성인)인증절차 없음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알선의 장이 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입절차에 본인인증절차가 없음. 닉네임/성별/나이/지역 등을 임의로 설정하여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최대화 됨.

### 다-2. 대화내용 저장 불가, 채팅창 캡처 불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시스템이 성매매 유인·알선을 조장하는데 매우 유효한 기능 중 하나는 1:1 채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채팅창을 나간다면 그와 동시에 모든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것임. 대화내용을 저장 한다거나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이것은 성매매 유인·알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성구매 남성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대화내용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은 채팅 창을 캡처하여 저장해 두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캡처를 할 수

없게 기능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태임.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의 변화는 무분별한 채팅 환경을 조성하고 성구매 남성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3. 다양한 채팅 방식, 다양한 금전거래

최근 일부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영상채팅 시스템과 포인트 활용 방식은 실제로 손쉬운 성매매 환경으로 제공되고 있음. 영상채팅을 1분 무료 영상채팅으로 상대방을 탐색한 후 포인트를 사용하여 영상채팅을 이어가면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임. 또한 다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1:1 채팅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답이 오고 대화가 이어짐에 따라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상대방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형태를 지님. 물론 두 가지 경우 모두 포인트의 일부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돌아가고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함. 따라서 매개물이 포인트일 뿐이지 실제로 돈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도 그 이득을 취하는 형태임.

라.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성매매 유인·알선의 장을 제공하지만, KBS 추적60분에서도 방영됐듯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 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마.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리결과가 고무적이지는 않음(미유통, 중복신고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되거나, 일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처분이 내려졌음).

바.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알선의

상황을 묵인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자들에게 성매매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하는 피해 아동청소년 2명과 함께 2명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와 5명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를 고소고발하려고 함.

## 2. 계획 및 일정

1)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중 2인의 동의를 얻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이를 동의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고발한다.

2) 공동고발 기자회견 후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3)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장 접수 일정

일시: 2016년 10월 11일 오후 2시-3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서울 명동)

3. 현재 작성중인 고소고발장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고소 · 고발장

고 소 인      1. 김 〇 〇

서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2. 이 〇 〇

경기

고 발 인 1.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영등포구 [REDACTED]

대표자 조 진 경

전화: 02-6348-1318

공동고발인 (한국 YWCA, (사)탁틴내일, 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등  
100여개 기관 참여 예정)

위 고소인들과 고발인들의 대리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소인 1. 성명불상자(채팅앱 ‘친구만들기’ 관리자)

2. 성명불상자(채팅앱 ‘심톡G’ 관리자)

피고발인

1. 성명불상자(채팅앱 ‘즐톡S’ 관리자)
2. 성명불상자(채팅앱 ‘앙스’ 관리자)
3. 성명불상자(채팅앱 ‘앙톡’ 관리자)
4. 성명불상자(채팅앱 ‘톡앤’ 관리자)
5. 성명불상자(채팅앱 ‘영톡’ 관리자)

## I. 고소·고발 취지

고소인들과 고발인은 피고소인들과 피고발인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 고소·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